

# 2020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자료 (수강생)

## 1.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

### 가. 학점은행제 개요

학점은행제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,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### 나. 각종 신청종류

| 구 분    | 내 용   | 수수료             |
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학습자 등록 |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 하는 것(최초 1회)        | 4,000원          |
| 학점인정신청 | 시간제등록 및 독학학위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절차 | 1학점 당<br>1,000원 |
| 학위신청   |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정해진 기간 중 학위신청을 하는 것       | 없음              |

### 다. 2020년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1/4분기                        | 2/4분기                  | 3/4분기                  | 4/4분기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온라인 접수<br>(개인 신청)           | 19.12.16(월)<br>~ 20.01.31(금) | 04.01(수)<br>~ 04.29(수) | 06.15(월)<br>~ 07.31(금) | 10.05(월)<br>~ 10.30(금) |
| 대구보건대학교<br>기관 접수<br>(단체 신청) | 19.12.16(월)<br>~ 20.01.9(목)  | 04.01(수)<br>~04.10(금)  | 06.15(월)<br>~07.9(목)   | 10.05(월)<br>~10.14(수)  |

※ 동일분기 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하며, 단체접수 기간은 길지 않으므로 신청 시 유의바람(추후 일정 변동 될 수 있음)

## 2. 교육일정 및 장소

가. 수업기간 : 2020년 4월 2일(목) ~ 6월 25일(목)

| 수업회차 | 수업일자           | 시간          | 수업형태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  | 2020. 4. 2(목)  | 18:30~21:30 | 비대면 수업   | 과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            |
| 2    | 2020. 4. 9(목)  | 18:30~21:30 | 휴강       | 6. 18(목)<br>18:30~21:30 보강 |
| 3    | 2020. 4. 16(목) | 18:30~21:30 | 정상 출석 수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  | 2020. 5. 21(목) | 18:30~21:30 | 정상 출석 수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  | 2020. 6. 25(목) | 18:30~21:30 | 정상 출석 수업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나. 실습기간 : 2020. 04. 03(금) ~ 06. 21(일)

다. 지도교수 및 강의실

| 분반 | 지도교수 성명 | 강의실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1반 | 이기량     | 인당관 7610호 |    |
| 2반 | 박영주     | 인당관 7613호 |    |
| 3반 | 임윤용     | 인당관 7508호 |    |

## 3. 실습 의뢰 협조 공문 관련 안내

가. 실습기관으로 발송하는 실습 의뢰 협조 공문은 개강일 익일[4/3(금)]에 실습처로 팩스 발송 예정

나. 실습일지 '실습의뢰에 대한 회신서' 에 실습처 직인을 받아 **3회차 4.16** 수업 시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도록 함

## 4. 실습 종료 후 제출 서류 안내

| 페이지       | 제출 서류명           | 제출 내용 및 방법  | 회신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p.25      |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     | 대학에서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을 4. 3(금)에 발송 예정<br>절취 후 작성하여 제출 | 4. 16(목) 수업 시 담당교수님께 제출         |
| p.101~105 | 실습평가서            | 절취 후 실습지도자가 평가할 것<br>(실습지도자 및 직인 날인)                | 실습종료 후 7일<br>이내에 평생교육원<br>으로 제출 |
| p.107,109 | 현장실습 확인서<br>(2부) | 절취 후 2부 작성하여 모두 제출<br>할 것(실습지도자 및 직인 날인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지전체      | 실습일지             | 공란 없이 빠짐없이 작성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제출된 실습일지는 평생교육원 성적 평가 자료 보관용이며 반환하지 않음

## 5. 성적평가 및 일정

### 가. 성적평가 배점비율

| 전 공 명 | 과 목 명    | 배 점 비 율(100) |      |    |    |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--|
|       |          | 기관평가         | 실습일지 | 출석 | 과제 | 수업참여 |
| 사회복지학 | 사회복지현장실습 | 50           | 20   | 10 | 10 | 10   |

※ 중간·기말고사 별도 없음

### 나. 성적열람

- 열람기간 : 2020. 6. 29(월) ~ 2020. 7. 1(수)

- 신청방법 : 평생교육원홈페이지 아이디&패스워드를 문자 발송 → 로그인

### 다. 성적이의신청

- 신청기간 : 2020. 6. 29(월) ~ 2020. 7. 1(수)

- 신청방법 : 평생교육원홈페이지 로그인 → 성적이의 신청 접수

※ 코로나-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수업연기로 성적 이의 신청기간이 짧아짐을 양해 바라며, 신청 기간 경과 후 접수가 불가함

## 6.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안내

가. 본인 거주 지역 사회복지사협회(<http://lic.welfare.net>)에 개인 신청

나.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구지부 : 053-986-9881

## 7. 환불 안내

가. 근거 : 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」 적용

나.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금액 산출표 [표1] 참조

## 8. 평생교육원 문의처

가. 전화번호 : 053-320-1285

나. 팩스번호 : 053-320-1286

다. 사무실 주소 :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(태전동) 대구아트센터 302호

라. 홈페이지 주소: <http://cec.dhc.ac.kr>

## 9. 코로나-19 바이러스 감염예방 지침 준수

### 가. 실습생 본인

- 개인 위생 감염 예방 규칙(마스크착용, 손씻기, 기침 예절 등) 준수
-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권고사항 준수

### 나. 실습기관의 감염예방 규칙 요구(미 준수시)

- 위생환경 철저
- 청소, 소독, 환기 강화

#### ※ 기타

- 코로나-19 바이러스 감염병 증상(유사증상 포함) 발현 시, 대학 출석 수업에 참석하지 마시고, 본원으로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.
- 실습 중 코로나-19 감염병으로 인한 실습의 차질이 있는 경우 본원과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표1]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금액 산출표

| 반환사유  | 반환사유 발생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반환금액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<br>(1. 과오납의 경우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       |
|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<br>(2. 학습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<br>3.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<br>4.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 하게 된 경우) | 수업 시작일 전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습비 전액              |
|   | 수업 시작일 부터<br>총 수업시간의 1/6경과 전        |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
|   | 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<br>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
|   | 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<br>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
|   |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경과                    | 반환하지 않음             |

## [표2]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

### 1.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

| 구 분  | 실습시간  | 실습기관          | 실습세미나 |
|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
|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0시간 | 종전기준에 따른 실습기관 | -     |
|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,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경우 | 120시간 |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| -     |
|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  | 160시간 |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| 30    |

### 2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되는 교과목 및 추가되는 교과목

가. 이수연도(2020. 1. 1 시행일 이전, 시행일 이후)와 관계없이 변경 전 교과목명과 변경 후 교과목명 모두 인정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사회복지개론<br>→사회복지학개론  | 사회복지법제<br>→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 | 사회복지발달사<br>→사회복지역사  |
| 의료사회사업론<br>→의료사회복지론 | 정신보건사회복지론<br>→정신건강사회복지론 | 학교사회사업론<br>→학교사회복지론 |

나. 신규 개설되는 교과목 : 2020. 1. 1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행일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선택과목으로 인정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| 국제사회복지론     | 복지국가론    | 빈곤론 |
| 사례관리론       |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| 사회복지와 인권 | -   |

3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(기관실습)  
 가. 기관실습 변경사항

| 구분    | 기존   | 변경  |
|-------|--|---|
| 실습시간  | 120시간  | 160시간   |
| 실습기관  |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, 시설, 기관 및 단체  | ① 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<br>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<br>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 |
| 실습지도자 |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|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<br>②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|

나. 실습인원 :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

다. 실습시간 :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,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

※ 평일실습, 주말실습, 주간실습, 야간실습 등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실습 1건으로 보며, 같은 기간 내에 5명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음